

제43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감사원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헌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법무부 소관
 - 대법원 소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2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2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0)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4
 - 소위원장(박형수·김한규·김승원) 인사 5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5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6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의사일정 상정의 건 6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6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6
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12

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12
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12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12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12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12
1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12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12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17
2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17
2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0)	24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3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1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1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8
2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38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38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38
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8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소위원회 중 법안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의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 5개 위원회 소관 21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5건의 고유법안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0시 개회인데 조금 논의할 것들이 있어서 개회 시작이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최대한 시간을 맞춰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9일 법안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소위를 구성하면서 위원 정수 및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배분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한 결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맡기로 위원장과 양 간사 간에 합의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기표·김동아·박균택·박지원·이성운 위원 등 6명, 국민의힘 박형수·김민전·윤상현·주진우 위원 등 4명, 비교섭단체는 진보당 손솔 위원, 이상 11명의 위원님을 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기표·김동아·박균택·이성운 위원 등 5명, 국민의힘 광규택·김태규·주진우 위원 등 3명, 비교섭단체는 진보당 손솔 위원, 이상 9명의 위원님을 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을 소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소위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각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지 않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법안심사2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박형수·김한규·김승원) 인사

(10시36분)

○위원장 서영교 오늘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형수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수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소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난 2년간 22대 국회 전반기에 2소위로 회부된 안건이 단 1건도 없습니다. 당연히 2소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아마 소위원장 역할을 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제2소위원회는 법령의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때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해 단체 간의 충돌 이런 문제가 해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2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전반기에 단 1건도 2소위로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22대 후반기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위원장으로서는 제2소위원회에 만약에 안건이 회부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안건이 반드시 회부될 것 같으니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수 간사님과 함께 소위 구성 합의를 위해 애써 주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열심히 하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법안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 간사님께서 청원심사소위도 조속히 구성·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39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입니다.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항과 3항을 상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9일과 21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법무부, 대법원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십시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입니다. 숙려기간 미정과 의결입니다.

다음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위원장 서영교 타위법안 심사 제4항부터 제24항까지입니다.

운영위 관련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제5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국회운영위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서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등과 시행일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요.

검찰총장후보자 및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 대해서 각 법률 근거에 따라 시행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안 부칙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은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약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현재 약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개정안에 따른 약칭을 인용하도록 안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문을 신설하여 2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명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박형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저희들이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안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지금 중수청과 경찰청 수사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이런 개편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중수청이 이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출범을 한다 그러면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률의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수사와 기소가 집중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지난 70년간 굉장히 오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세계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인권을 더 보장하고 그리고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그런 출범을, 출발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에 따라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 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 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아직도 세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을 피해자를 위해서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의 눈을 더욱더 부릅뜨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서 형사사법 수사 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주진우 위원님 3분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든지 또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경찰이 사건을 직접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걱정하는 마당에 연달아 터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1건을 51건으로 나눠서 수사를 하지 않나 또 출동한 경찰관은 눈치 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 않을 않나.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

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족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가동된다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가면서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아 위원 짧게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동아 위원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수사권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 있습니까? 경찰의 치안 문제이고 정말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지 이게 저는 수사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렇게 보완수사권 관련된,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든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업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과 또 한 분 더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서영교 다음 것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세요,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이것 가지고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쪽에서 한 명 더 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다음 거에 하세요.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조금 전에 이게 보완수사권이 있기 이전에 제주 실종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실종 사건도 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경찰이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실종을 신고하고 이러는데 통화가 되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단 며칠 만에 네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것도 놀랐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타살의 위험이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짓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된 것이지, 왜 지금 발견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그 이유 등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가 정말 있어야 될 텐데 그냥 타살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요. 이것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잘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걱정이 좀 덜 되겠지요. 그런데 시신을 보자마자 어떻게 타살 위험이 없다라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제주 경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체포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 자격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진상도 규명해야 되고, 사람이 사라졌는데 경찰에게 요청했는데 경찰이 찾아내야지요. 그러나 또 종결시키는 사례도 있지만 그거는 그만큼 종결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일벌백계해야 된다.

저는 그 위에 같이 종결을 책임진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명 있을 때 파출소에서 그 일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나 종결하는 책임자는 당연히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이게 또 보완수사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님도 또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이 부분과는 관계가 없지만 철저히 경찰의 잘못은 지적해야 되고 이것과 관계가……

○김태규 위원 보완수사권하고 연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왜 그 내용이 아닙니까, 관련 있는데.

○주진우 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과정 속에서 검사는 이 내용이 제주 경찰이 문제 있는 것을 수사하게 될 때 보완수사권이 또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것으로 또 정치적 이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경찰대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정치가 이런 거 안 따지면 뭘 따집니까, 도대체.

○박형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주진우 위원 물 탈 거면 물을 타세요.
- 김태규 위원 적당히 하세요. 갑자기 그게 이거하고 진짜 무슨 상관 있습니까? 뭔 상관 있느냐고요?
- 위원장 서영교 최영중 시의원께, 갑자기가 아니라 어제 두 명이 더 나왔잖아요.
- 김태규 위원 이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보완수사권하고 이야기하는데.
- 위원장 서영교 어제 미성년자 성착취가 2명이 더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 말을 안 해요?
- 김태규 위원 보완수사권 이야기하자면서요!
-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좀!
- 김태규 위원 보완수사권 이야기하세요. 왜 그 얘기하세요?
- 위원장 서영교 한마디 사과를 안 해요.
- 김태규 위원 그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 한마디 사과가 없어!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 주진우 위원 아니, 물을 탈 거면 물을 타십시오. 지금 제주 여성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데 그걸 물을 타고 있어요?
- 위원장 서영교 제주 실종사 사건도 큰 문제고요.
- 김태규 위원 애초에 형사수사권 조정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그걸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통신영장 재발부돼서, 우리가 여기서 긴급현안질의해서 재발 부된 거 아닙니까?
- 주진우 위원 아니, 보완수사권 얘기하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지요.
- 위원장 서영교 그러고 났더니 몇 명이 더 나왔어요. 미성년자 4명이 더 나왔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 주진우 위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김태규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고. 물 탈 걸 타야지!
-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세요.
- 위원장 서영교 제가 정말 분노합니다.
- 김태규 위원 내가 분노해요, 내가 분노!
-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준 사람 아니야?
- 곽규택 위원 왜 이렇게 또 싸움을 걸고 반말을 해요?
- 김태규 위원 왜 또 반말이야?
- 곽규택 위원 행안위원장으로 좀 가세요, 행안위원장으로.
-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도 ‘내가 분노해, 내가 분노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 김태규 위원 나 혼자 한 말이에요, 그거는.
- 곽규택 위원 경찰개혁하러 행안위원장으로 좀 가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회의장을.

○위원장 서영교 자, 여기서……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시의원이 저지른 행위예요.

○김태규 위원 그만해요, 그만. 진짜 그만해야 될 게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서영교 이 정도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회의가 시끄러워져.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지적은 꼭 하고 갑니다. 안에서 회의하세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세요.

그리고 4명의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자가 더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이걸 막았던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적해야지요. 다 같이 지적해야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호 입법차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정명호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자중기위 관련 법안입니다.

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1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중재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조정법이 다수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3명 이하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중재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에 합의를 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종 과세 정보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국세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개인 또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과세 고용 정보의 요청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처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7항, 13항, 18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6항 등 나머지 8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들에 대해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지금 장관 공식 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님, 대·중소협력기금은 저희 소관인데 농어촌상생기금은 저희가 같이 관리하는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소관……

○박지원 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대정부 건의안에서 국회 결의가 됐어요. 이것은 농식품부로 옮겨 가지고…… 아니, FTA 하면서 농어촌상생기금을 하게 돼 있는데 기업들은 하고, 중소기업에서 기업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농식품부로 이관하세요,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대·중소상생기금이 있었고 FTA 체결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출연하는 주체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대통령께서도 빨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저희 쪽으로는 지시 사항이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생중계된 그때 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든 중기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농어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로 이관해서 이것이 집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나중에 그거 좀 보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3분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15항 관련해서 소상공인기본법, 국세청 정보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위원님.

○김동아 위원 이게 보니까 수정 내용이 체계·자구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아예 국세청 의견을 많이 받아서 뺀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소상공인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나와 있어야 향후에 소상공인 지원할 때 좀 편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매출액만 나와서는 중기부가 업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위로, 소위의 통과 때는 왜 이런 논의가 없었고 왜 이제 와서 이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님 일단 그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과의 추가

협약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심사하시면서……

○**김동아 위원** 중기 소위 때는 없었나요? 국세청 부동의한 상태에서 의결이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그때는 사실 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에서도 이견 없으므로 통과는 됐지만 이후에 법사위 검토하시는 과정에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김동아 위원** 당시 그러면 중기부 소위 위원님들하고는 다 상의가 된 건가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그때는 국세청하고 추가 이견이 없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지금 오면 삭제되는 게 영업손익하고 당기순손익이나 이런 부분을 법문에서 빼게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 같은데 그 소위가 통과될 때는 담았던 것이 지금 법사위 와서 체계·자구가 아니라 이견 아예 법안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협의해서 이거 통과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님, 이게 당초 취지가 저희 취약 영세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로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그런 과세 정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법사위 차원의……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부가 영업손익 없이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인지 아니면 어려운 소상공인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영업손익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다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건지 그걸 여쭙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그거는 담당국장이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의를……

○**김동아 위원** 예.

보고해 주시지요. 산자중기 소위에 있을 때 제가 이거 관심 있던 법안이었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에 와서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산중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 심사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너무 상세한 자료들을 고민해 봤을 때 매출액하고 판매관리비 총액 정도 받으면 그 부분 매출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료들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법안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그걸로 판별이 된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매출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손익인데 매출과 판관비는 공개하고 영업손익을 공개 안 하는 게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저 때문에 이 법이 통과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곽규택 위원 아니지.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김동아 위원 그런데 통과 안 되는 것보다 향후에 수정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장님, 추가로 한마디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담당 국장이 얘기한……

○위원장 서영교 설명을 잘해 주세요. 자꾸 의문을 가지시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사실 매출액하고 판관비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순손익은 저희가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정보를 받지 않아도 정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그렇게 협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의문이 다 풀리네요.

(웃음소리)

○곽규택 위원 박 위원님, 아니잖아요.

○김동아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도 통과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문이 다 풀리셨습니까? 그런데 또 저런 지적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위원장 서영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느낀 건데 과한 정보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금 내역이라든지 경제 내역 과한 것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국회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 왔는데 어쨌든 그런 선에서 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13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부터 1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용석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께 찰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잘 살려 주십시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기후특위 관련한 법안입니다.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 위원장 제출)

2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서영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기후특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종전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이 미래세대
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031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하는 한편 녹색국채와 녹색채권 발행, 녹
색금융과 전환금융 촉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종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제8조제1항에 근거를 두
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안 제8조 2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바
중장기감축목표의 근거조항을 제8조 1항으로 인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제8조로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6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부속기관의 설치와 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임을 고려하여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와 그 소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평가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취약
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회복
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의 권한 주체와 근거규정

이 누락되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2조제5항에서 지원기구의 지정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실체적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관되는 조문 체계에 맞추어 다른 법률의 개정 조문을 정비하고 제정법 시행에 따른 일선 행정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기후보험 지원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재원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 참여 대상에 지방해양수산청을 명시하여 지역 해양수산 행정과 적응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술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손술 위원** 탄소중립기본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후특위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출발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장관님 보시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충분하게 지금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여러 여건상 나름 최선의, 최적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술 위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감축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크게 전가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권 위반이다 이렇게 판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31년부터 49년까지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입법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손술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국회 차원에서 헌재의 판단 결정이 충분하게 되었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에서 지금 목표에 대해서는 범위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규제는 그 범위형의 하한에 맞출 수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실질로 들어가면 목표는 범위형으로 제시하고 실제는 하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 기후특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시민 공론화 과정을 국회 기후특위에서 네 차례나 진행하였는데, 시민들께서 초반에 감축을 더 강하게 하고 나중에 낮춰지는 오목형 경로가 좋겠다라고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법안에 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범위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겠습니까만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범위가 굉장히 큼니다. 제조업이 전체 전기의 55%를 쓰고 있고 그게 대부분 뭐랄까요, 전기나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어서……

○손솔 위원 장관님,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 말씀으로 같이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손솔 위원 제8조의2 같은 경우에는 소위 논의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하는 조항에 산업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들어가서 저는 이것은 위상이 안 맞는 조항이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장관님께서 실행해서 계속해서 갈 거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시지요.

○손솔 위원 이게 1~2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이 헌법불합치 판결에 계속해서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후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이 법안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목표를 분명하게 더 강하게 제시하고 오목형 경로가 되어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토론이 공론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매우 아쉽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해야 이후에 있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방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안에서는 아쉬운 점이 정말 크게 있고요. 이후에 실행하는 데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솔 위원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 얘기는 지난해 결정된 2035년 NDC 목표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논의를 할 때도 소위 범위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3~61%. 그때에도 산업계에서는 소위 선형 경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직선형 경로도 매우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계,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전체의 15%, 11% 해서 그 2개만 합해도 25%가 넘는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업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산업체 입장에서는 직선으로 가는 경로도 매우 어려워했고 이번에 중장기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도 산업계에서는 소위 오목형이 아니라 볼록형 경로도 하나 설정해 달라 혹은 비상시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기후특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데도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나 공론화 과정에서는 더 강력한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지구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목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한의 목표가 소위 탄소중립으로 가는 직선형 목표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오목형 목표를 같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다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에너지 대전환을 포함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님, 아주 간단한, 지엽적인 체계·자구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칙 9조에 잘못 인용된 수정을 해 놔는데요, 보니까. 24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게 25조제2항이 되어야 되는 거고 19조로 되어 있는 게 21조, 22조로 돼야 되는 것 맞지요?

○전문위원 이세진 예.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런데 21조, 22조를 보면 21조제1항, 22조제1항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인용 조문을 보니까. 위에도 보면 25조는 25조제2항이라고 특정을 해 놔놔요. 그러면 밑에도 22조제1항, 21조제1항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뭐…… 21조 1항 꼭 특정 안 하더라도, 21조만 해도 포괄적으로 특정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앞뒤 균형을 맞추려면 그것도 항으로 특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끝나셨습니까?

○박형수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현 위원님 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일 잘하는 김성환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장관이니까 일 잘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산지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에서는, 해남에 직접 오셨지만 혈도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했습니다. 400MW예요. 완도의 금일 해상풍력발전 600MW, 이것도 단일로는 최대입니다. 나아가서 진도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3.6GW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신안의 3.7GW가 이게 전부 해남 솔라시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더 많은 태양광, 해상풍력발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전에서 송전선, 변전소 이러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만 전기를 우송하는 소위 고압망을 우리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철탑, 기존의 154나 345kV의 기존 철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탑을 소위 재건축해서 복

충화해서 철탑의 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철탑을 신설하더라도 소위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지중화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경과지를 선정하는 데 나름 민주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민들의 민주성이 취약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결정하실 때까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을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는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가피하게 송전망을 설치하더라도 그 인근 주민이 그것을 활용하여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금을 보상한다든지 보상의 규모를 늘려 드린다든지 계통소득을 지원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최대한 보상을 통해서 소위 전기 공급도 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장관의 논리대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중화 그리고 주민참여,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에너지원 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보도도 많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값이 싸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 이것이 시행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오늘 1시에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그 기본안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소위 서울·수도권과 중부권 또 남부권 해서 네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또 행안부가 갖고 있는 소위 지역균형 관련한 지수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2개의 매트릭스를 섞어서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싼 요금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고려해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가급적 조기에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을 확실히 눈에 보여야 지역들이 지방으로 온다는 것 꼭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 간단하게. 마이크 안 줘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특별한 예외로 1분만 더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지금 완도하고 제주도에 지역 분쟁이 있어요, 사수도라는. 그런데 거기

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땅은 제주도, 바다는 완도’ 이렇게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났는데 거기가 해상풍력의 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기후부에서 잘 보시고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유명하시니까 제주지사님 하고도 잘 문제를 푸셔 가지고. 어차피 그게 케이블이 제주도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고 하더라도 육지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진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가까우니까. 제가 유능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김성환 장관이 좀 해결해 주시라 이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거기에 추자도도 그런 유사한 건이 있어서요.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여·청양 일대 지천댐 가지고 한번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윤상현 위원 그때 장관님께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찬반 의견 들어서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론화추진위원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제 기억으로 지난주에 최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상현 위원 회의가 됐습니까? 그 위원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위원회 이게 잘 안 돼서 시작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찬반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양측에서 이견이 있어서 공론화의 위원 구성을 찬반 당사자들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쪽 했고요. 내일모레 공론화위원회 의견 등등을 다 감안해서 남은 7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정해서……

○윤상현 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 주민 참여가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주민은 의견 수렴을 했고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의견, 그러니까 그 일대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강도가 아주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역 일대의 지역 분들은 찬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의견 수렴이 됐는지 모르겠다.

특히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 서남부지역 일대를 보면 보령댐으로 우리가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금강 도수로까지 이용을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물 부족 사태를 위해서는 이게 지천댐이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수렴이 됐는지 주민 의견이 중요하

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물 부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차적으로 잘 수렴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요소까지 이 얘기가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당초에 지천담은 홍수 방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이냐가 당시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충남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점들까지를 고려해서……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확정하고 국민들한테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조만간 발표하시겠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시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남기시는 안이 무슨 안입니까?

○손술 위원 19항의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19항 탄소중립기본법.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부분 19항 관련해서는 제가 손술 위원님과 지금 의견을 나눴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강력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술 위원께서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손술 위원님이나 아니면 시민사회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또한 시민사회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욱더 요구하는 내용대로 또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서영교 더 지향해 나가실 것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그래서 손술 위원님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시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표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손술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손술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제19항에는

손술 위원님의 의견과 위원장의 의견을 남기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보면 요즘 날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황사가 오더니 황사도 지금 없고 그러나 더위는 극성을 부리고 그래도 전 지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요. 더욱 애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인사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기후와 관련해서, 저희 부와 관련해서 저희 부에게 세 가지 퍼즐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AI 혁명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을 소위 석탄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인근 국가들과 치열한 산업경쟁을 하고 있어서 전기요금도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 가지 퍼즐을 동시에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세 가지 퍼즐을 한꺼번에 잘 풀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위 법안입니다.

2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0)

(11시32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정보위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영역에 해킹 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나목은 국정원의 경제안보 관련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제안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은 안보 현안 관련 일정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대리출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뒤에 배석한 분들이 국정원 직원분들이에요?

○위원장 서영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직원분들이십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면 좀 퇴장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서영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나중에 들어오시지요. 다음 법안이시지요? 다음에 들어오셔야지요.

국정원이라 혼자 오셨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직원들은 와 있습니다만 신분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까 분들이 국정원분들인 줄…… 신분이 노출될 뻔했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술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이런 순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지금 비상계엄 세 달 전에 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국정원에서 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윤건영 의원님께서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제기하고 계십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제가 맡은 직무 범위는 국정원의 인사, 예산, 조직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각 국외 정보라든가 국내 정보, 과학 정보 이쪽은……

○손술 위원 기초실장님이 하시는 범위랑 다르다고 말하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직무 범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손술 위원 국정원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세 달 전에 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정원에 방첩사를 도와서 야권 정치인, 시민사회의 인사를 추적하고 체포하라는 지시, 윤석열 정부 때 북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은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TF,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지금 국정원이 오늘 올라오는 국정원법 같은 직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국가가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서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기관이 국정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올라온 법안은 경제안보라는 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직무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내란에 대한 개입 부분에 대해서 인사나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국정원이?

일주일 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나왔지요, 정치 관여 혐의로. 기관이 정부 바뀌었다고 갑자기 다 바뀔니까? 기관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경제안보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국정원 개혁의 역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상황, 의심을 하면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지금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은 개혁하고 인사 조치하고 그리고 민주적 통제 기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혹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세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세월 동안 지내 온 술한 과 오들이나 잘못들 때문에 지금도 여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나서 저희 원에 있는 지도부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이미 특별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도 한때는 민변이라든가 시민단체 활동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가서 들여다보니 특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라든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SKT나 KT 이런 대규모 해킹 사고가 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장비들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라든가 언론, 모든 곳에서 저희들 보고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는 질타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경험치와 기술과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도와서 이 부분은 원인 규명을 하고 대응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자 했으나 결국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절박한 국가의 국익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슬 위원 1분만……

○위원장 서영교 우선 또 계시기 때문이에요.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김민전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김승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실장님 지적대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역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국정원의 과거 그런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정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이 같이 낸 법안이 통합대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정보위에서 이것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당 조문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점에 이르렀는지 또 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정보위에서 논의될 때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권력을 남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제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남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100%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경제안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리고 괄호를 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그 단어들과 내용은 개별법에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법에만 두면 국정원이 자의로 남용할 수가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중하게 더 제안을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 무조건 사이버 정보 침해 여부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역시 우려가 있어서 의심이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즉 어떤 객관적인·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 그곳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여러 해외에서 그 기술을 빼내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관련된 재판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확실히 이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보가, 기술이 한 번 유출이 되면 거기에 투입된 수년의 또 수조 원의 세월과 비용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두루두루 살펴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통령령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고. 뭐였지요, 김승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김승원 위원** ‘의심한 경우’가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해서……

○**위원장 서영교** 사이버 관련해서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체계·자구 수정을 이야기하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김승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국정원이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란 3개월 전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이 개입한 것 그리고 내란의 종결 시점이 12월 14일로 2차 특검에서는 연장됐어요. 여기에 부화뇌동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을 이대로 두면은요 내란세력들이 국정원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특검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원장께서 과감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당 의원이면서 간첩법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 이게 관철돼서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산업스파이, 경제안보국은 제가 국정원장 했을 때 신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의 조직을 늘리지 않으려고 해서 비서실장 직급이 1급인데 거기를 하향 조정해 가지고 부서장 TO를 거기다 주고 산업스파이를 국정원에서 본격적으로 색출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개발은 10년, 유출은 1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지금은 파아 구분 없이 한국을 집중 공격해서 산업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국은 필요하다. 그 대신 여야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것은 시행령이나 법에 촘촘히 담아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겁니다.

사이버국도 제가 원장 때 승격시켰습니다.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그리고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러시아·중국·북한이다’ 했지만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한국·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킹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하는 것은 다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버도 매년 털립니다. 국회도 털리고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안보연구원 털려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관들 전체가 다 털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사이버 시장이나 북·중·러에서 코레일 시스템에 침입해 가지고 파괴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철 시스템에 침입해 가지고 무력화시킨다면 서울시가 난리가 날 거예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도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면 쿠광이 그러한 것을 국정원에서 요구했을 때 민간은 할 수 없다, 거절해 가지고

자료 안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산업을 보호하고 스파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단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국정원이 또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 사찰하지 않도록 촘촘히 시행령이나 법안에 넣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정보위에서 6개월 동안 특별감찰을 실시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원들한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정원이 잘못 저지른 업보이고 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나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해서 명심하고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것들을 법령에 근거를 분명히 남겨서 더 이상은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못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특별감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말씀만으로 안 되니 또 제도적 보완장치를 다음에 가지고 와 주십시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위원장 서영교 제가 이따 마무리에서 말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로 이관될 당시에 해외 통신망과 수사력이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요. 또 경찰이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이것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다, 대만 등과 비교한다면 형량이 낮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대공수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일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첩보들을 수집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한테 모든 걸 다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의 저희 직원들을 위원님한테 보내서 특별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량 낮은 문제는 아무래도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여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손술 위원님에게도 더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시 본회의는 안건이 또 한 4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본회의 이후에 우리가 연장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들도 상정하고 그래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고유법 상정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가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시 30분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정원 기조실장님, 제가 요구하는데요 2020년에 국정원법을 개정할 때 김병기 의원이 정보감찰관을 두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 제가 국정원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을 제가 보기는 보았으나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여러 곳에서 사실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감독기구를 뒤야 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감찰관 아니면 독립감찰관 등의 기구를 두어서 국정원이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게, 다시는 그 전과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국회에서도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정 사항도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요. 그 과정에서 손술 위원께서 또한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으로 담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결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금방 의결하겠습니다.

과방위 게 남아 있네요. 과방위 법안입니다.

2217514)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76조 등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 등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중계방송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당 행사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새로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제한된 범위의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 법률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또한 이미 체결된 중계방송권 계약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및 그에 따른 신뢰보호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하여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네요. 잠깐 내려 주시고요.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좀 멀어서 그러면 간단히 2분씩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됩니까?

○박형수 위원 쓸데없이 위원장님 자꾸 말씀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것을……

○위원장 서영교 쓸데없이라니요, 쓸데없이라니요.

○박은정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박형수 위원 쓸데없이, 그게.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은 제한하고.

○김태규 위원 본인 얘기만 줄였어도 지금 충분히 했지요. 2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

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토론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마음대로 어떻게 제한해요.

○위원장 서영교 토론 두 분만 하세요. 두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은정 위원 말씀을 조심하세요, 말씀을. 쓸데없이라니!

○위원장 서영교 쓸데없이라니.

○박형수 위원 쓸데없이지!

○위원장 서영교 두 분만 하세요. 김태규 위원하고 광규택 위원이 아까 토론 안 하셨으니까 두 분이 하세요.

○박형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은 시간을 줄이고.

○박은정 위원 말씀을 조심하세요, 말씀을.

○김태규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본인이나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토론돼야 될 건데 여기서.....

○박형수 위원 이런 것을 토론을 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광규택 위원 토론해 주세요.

광규택 위원과 김태규 위원 두 분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토론해요, 우리도.

○김태규 위원 앞에서는 1분씩, 2분씩 여유 있게 그냥 선심 쓰더니.

○김민전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1분씩 더 드리더니.

○위원장 서영교 하세요.

○광규택 위원 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 모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전문위원이 이게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JTBC에서 중계권 독점하려고 했다가 본인들 중계권료 회수가 안 되니까 KBS·MBC 동원해 가지고 그거 지금 같이 부담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미 중계방송권 계약이 끝난 사안에까지도 적용할 이런 법을 갖다가 사후에 만들어 가지고 JTBC 부담 덜어 주자 하는 법이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소급입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갖다가 해당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께서 ‘헌법재판소를 가도 수십 년 걸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점심 때 국회 앞에 나가시면 할아버지 한 분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하시는 분 계세요. ‘무식하면 공부를 해야지’, 진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소급입법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될 법이고요. 이거 특정 방송국 부담 덜어 주는 그런 법이 돼 가지고 사후에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거 반드시 수정 필요하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 법사위에서 헌법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에 분명히 안 맞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2소위에 회부해서 반드시 내용 수정을 거쳐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태규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교육을 하는 곳이고 코바코는 광고 판매를 하는 곳이고 2개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것 2개를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도 반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치려면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그 기금 통해서 언론진흥재단하고 코바코하고 합치는 게 오히려 사리에 맞지요, 둘 다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코바코가 지금 11년 내내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바코하고,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발자금으로 움직이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기관을 합쳐 놓으면 결국에는 거대 부실 공공기관 하나만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합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부 실적 쌓기, 아니면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지요. 사실은 코바코의 민영삼 사장님도 이 얘기 나오니까 싸우기 싫고 꼴보기 싫어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전 정부 사람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좀 많고 어차피 저한테는 또 시간 안 주실 우리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JTBC의 월드컵, 결국 자기들 대박 한번 치려다가 쪽박 찼지요. 그거 이제 주변에 다 나눠서 어떻게든 자기들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건데, 지금 JTBC와 관련해서 JTBC가 IOC에 자기들 중계권 반납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미 방미통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월드컵도 돈을 다 못 냈지요. 못 냈고, 그것 때문에 아마 IOC나 월드컵 쪽에서도 배상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고 IOC에서도 당연히 배상금 물어줘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거니까 그 배상금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관대하게 처리하시려면 1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안 주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김태규 위원 그래 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더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래요. 1분 더 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김태규 위원 계속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 IOC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한국의 어느 기업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면 값을 올려 쳐봐도 어차피 누군가는 살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는 게 대외 협상력, IOC나 월드컵하고 협상하는 데 더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리아폴에서 이걸 떠안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꼭 코리아폴보다는 네이퍼나 쿠팡, 넷플릭스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걸 인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한 가능성들, 그러한 협상의 테이블들이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걸로 듣고 있고 과방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JTBC라는 특정 방송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이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JTBC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재판매를 해야 되는 법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JTBC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김태규 위원 아니, 이미 망한 회사인데 부담이 더 늘어나든 말든 그게 뭘 상관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역시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방송사와 연계되어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환기시켜 드리면, 지난 동계올림픽 때 최가온 선수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료방송에서 이것을 단독중계 하다 보니까 직접 중계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어지고 국민 통합의 계기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발달한 ICT 강국, 정보 강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에 유감이 있었고 바로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당시의 상황을 환기시켜 드리면, 월드컵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급히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다른 공중파가 아니고 JTBC 아닙니까? JTBC에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특정 방송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오로지 국민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방송법의 기본 목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혹시 또……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 토론합시다. 우리도 토론 좀 합시다.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위원님.

두 분 하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번에……

○박형수 위원 토론 안 하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들어 보세요.

○김승원 위원 이 법이 아무튼 보편적인 시청권을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낮은 형태의 법이라 예컨대 여기 위원님들이라든가 설득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했다고 해서 예컨대 방송사 간 중계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라,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 당국으로서 방송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위원회가 현행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서 국민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예컨대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대박을 치려는 특정 방송사의 그런 의도를 이 법에 의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송출할 수 있는 방송사와 함께 중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점권을 노리는 그런 폐해 그리고 과하게 낙찰가가 높아지는 그런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거는 어떠신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한다가거나 재판매를 권고할 수 있다거나 필요한 자료들을 하게 하거나 계약 전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었던 것이고 이런 제도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렇다면 어쨌건 우리 내부적인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중계 방송료가 아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독점적인 폐해로 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보고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계권을 낙찰받음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그런 폐해는 없어질 것 같고 독점으로 인한 한탕주의 내지는 대박을 노리는 것도 방지가 될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들으니가 수긍은 되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하는 부분……

○김승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개인 간의 계약까지 법으로써 변경 아니면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다들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논의라든가 또 과장이라든가 영향까지는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적절할 듯합니다. 의견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회의로 상정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오늘 저희가 고유법안을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많아서 좀 그런데……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할게요, 1분만.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드릴게요.

○박형수 위원 아따, 어렵네. 1분이라도 참……

○위원장 서영교 아따, 뒷말만 하지 말고 드린다고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선 이걸 정리를 하고 1분 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박형수 위원 먼저 할게요.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상한 발언 하지 마세요, 드렸으니까.

○박형수 위원 뭘 이상한 발언이요?

○위원장 서영교 1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저는 의사진행 제대로 좀 했으면……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 끝는 수가 있어요, 지금.

○박형수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지금?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10시 20분에 시작해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그러고는 무한정,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왜 있습니까? 정말로 소급입법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입찰료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결국 그거는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토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론 시간을 줄이고 다른 거 할 거 있다고, 토론 시간을 2분으로 하고 두 사람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의사진행 좀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다음번에는 의사진행발언 안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박형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김태규 위원 아니, 본인 위원장 발언만 줄였어도 저희들 3분 충분히 4명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하고 같은 줄 아세요?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좀.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 대단해 그래. 아이, 정말!

○위원장 서영교 어디다가 반말을 하는 거야?

○박형수 위원 반말하면 안 돼?

○위원장 서영교 어디다가 반말을 하는 거야! 몇 살이야!

○김태규 위원 또 나이예요, 또 나이? 또 나이야!

○곽규택 위원 나이가 두 분이 동갑일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검토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속 심사하는 안으로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고 김승원 위원님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

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지금 빨리 진행을 좀 하든지. 2분 주고 1분 주고 계속 마음대로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 서영교 4명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간사님, 저희 본회의 끝나고 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교 본회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좀 더 논의해 가면서……

○박형수 위원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12시 반에 끝내 달라고 하시요, 본회의 끝나고도 할 수 있는데.

○곽규택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물어봤는데 12시 반에 끝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빠 가는 거 아닙니까? 12시 반에 끝내 달라고 해 놓고 4명이나 질의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아이, 그전에 그러면 의사진행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본회의 끝나고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12시 반에 끝내 달라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김종철……

○박형수 위원 그전에 그러면 제대로 진행을 하든지.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말조심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도 말조심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같은 줄 아냐니 무슨……

○위원장 서영교 아니,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진행을 바로 하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교 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김태규 위원 개인 의견 말했어요, 개인 의견.

○위원장 서영교 무슨 개인 의견을 말해요? 나라를 위한 의견을 얘기하지.

○김태규 위원 계속 개인 의견 얘기하고, 아까 갑자기 뜬금 없이 무슨 성범죄가 어떻느니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누가 개인 의견을 얘기해요?

○곽규택 위원 그리고 보기보다 위원장님 나이가 그렇게 별로 안 많으시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보다 제일 많아요. 아시겠어요?

○곽규택 위원 뭐가 많아요? 간사님하고 동갑이더만.

○위원장 서영교 간사가 반말하면 안 되지. 간사하고 무슨 동갑이야, 내가?

○박형수 위원 아이고, 창피해요. 그냥 빨리 진행해요. 뭘 나이 따지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내가 더 창피해요, 박형수 간사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제24항까지의 법률안은 방미통위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회의에 올려 놓고 좀 더 심사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다음……

○박형수 위원 2소위에 좀 보내 줘요, 2소위에. 일 좀 하게.

○위원장 서영교 시끄러워요. 말을 잘해야 2소위로 보내든지 하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알려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려기간 미경과 관련한 법안들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16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 법안 중에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6항 및 29항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동의해 주셔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2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0)

(12시17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9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짧게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25항부터 2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공소청법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및 법률 제21857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개의 법률안은 공소청 및 검사의 기능,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에 맞추어서 법문을 통일하거나 다른 법률의 현행 조문을 위 시행 예정 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률 간의 통일성을 제고하면서 기본법의 부칙 개정 방식으로 법안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제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비를 좀 더 명확히 손질할 필요가 있겠고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상설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에게 수사권 관련 근거 규정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정을 현행과 같이 지방 공소청장이 결정하도록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에게 우리가 신설한 수사 관련 의무조항 등을 보완할 것인지 등 실체적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서 실체적 내용까지 보완하게 된다면 별도의 개정안 즉 위원회안 형식으로 성안하는 것이 법제 원리에 부합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열 전문위원, 제27항 및 28항 법률안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8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제29항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 수사과정상 정보의 주요 유형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사공무원·검사의 기록·등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기록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징계절차 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일 사건이 수사·송치·보완수사·재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완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사행위와 증거물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관리의 대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수사공무원’ 범위를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키고 법률상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 대상인 ‘접촉’과 ‘주요 수사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사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따라 기록·등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록·등재 의무의 점검 및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기관과 각급 공소청이 점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소관 및 지휘·감독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고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 및 징계절차와 관련해서 개정안의 법정형이 현행법상 다른 형사사법정보 관련 범죄보다 낮게 규정된 것이 적정한지 형벌체계의 정합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손 드셨는데요, 시간상 3분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그리고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박형수 간사님, 또 손 드신 거예요?

(웃음소리)

세 분,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윤상현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그리고 해방 이후의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하고 또 사퇴를 요구하는데 처장님이나 대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요,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에 또 5개 재판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씨라고 부릅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권위에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 아닙니까?

이진수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과 법률의 최전선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현수막으로 사퇴하라고 해서 대법관이 사퇴할 수가 있습니까, 처장님? 사퇴 가능합니다. 사퇴하나요?

헌법 106조가 뭐니까, 처장님? 헌법 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헌법 103조, 법관은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퇴 압박하고 현수막 거는 게 독립적 재판…… 그것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익표 실장께서도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침해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대법원장 몫의 제청권도 대통령이 행사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니까? 이게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고 소위 말해서 삼권분립 위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 사건의 재판을, 자기 스스로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르지 않느냐.

아르헨티나에 카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법관 5명에서 9명으로 늘렸지요. 차베스, 20명에서 대법관 32명으로 늘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전용 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셔야지요.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주십시오.

두 분께서 마지막 답변 부탁……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고 정말 우리가 존경해 왔던 예전의 대법원장이라든가 법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왜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결국에는 12월 3일 그 밤에 대법원은 뭘 했으며 왜 대법원장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불법계엄의 부당성을, 무효를 왜 밝히지 못했을까 등등, 5월 1일 날 민주적인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왜 갑자기 제1야당의 후보자를 전례 없는 속도와 그것으로 날려 버렸을까 등등, 그런데 이제는 또 내란 관련된 재판마저도 전원합의체라는 본인이 재판장인 곳으로 다 회부시켜서 특별법에 정해진…… 신속히

내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계속 지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야말로 정말 답답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처장께서도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헌법상 재직 중 불소추 규정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처장님이나 저나 같은 코스를 밟아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학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소추는 중단되는 것이고 당연히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재판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의 친윤 검사들에 의한 불법·강압수사, 조작기소라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분하다’ 이게 지금 처장님 개인 의견은 아니고 소수설이지만 그런 설이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과 실무적인 관행은, 대통령의 재판은 소추는 중단되고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와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소시효도 중단을 시켜서 일단 재직 중에는 대통령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 중단 사유가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처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또 이게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자꾸 국민의힘 위원분들께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언행에 신중을 기하셔라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김승원 위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실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불소추·소추 여부에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다만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나 국격이나 직무수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처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헌법조문에 그게 있습니까?

○**김승원 위원** 김태규 위원님, 물을 중요시하더니 쑥 들어오세요?

○위원장 서영교 헌법조문에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있지요.

○박형수 위원 소추가 됩니까? 소추가 재판입니까?

○곽규택 위원 소추가 기소예요, 기소. 그런 상식을 이상하게……

○김태규 위원 문헌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은정 위원 아직도 그것 하고 계세요? 공부 좀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소추의 대상이 아니니까 재판도 안 가는 거지요. 그것을 모릅니까? 소추의 대상이 아니니까 재판에도 안 가는 거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박형수 간사님, 토론하세요.

○박형수 위원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정치집단이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넣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 왔던 사법권 독립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넣었다고요? 저는 최소한 법조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청권 행사, 임명권 행사, 너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청권 행사했다고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이게 사법권 독립 보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사법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헌법상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미 헌법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지요. 십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7명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재판은. 불소추특권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해석까지도 강요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원행정처장한테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요? 이것은 정치적인 의견을 법관에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의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는 것과 뭐가릅니까?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대체토론하는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칙을 통해 가지고 개정하는, 여기에 넣고자 하는…… 여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 수사권을 없앴으로 인해 가지고 조문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장윤기 사건, 장미란 실종 사건 그다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조문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문 정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는 것을 넣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회로 법안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 전진송치 하는 방안,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왜 일곱 가지 범죄와 다른 범죄를 구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해서 전권송치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요구밖에 없어요. 여전히 지금과 동일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해서 또는 몇 가지가 되든지 간에 전권송치를 하면 그것만이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일한 문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는 것이지요.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보완수사권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소위에서 또 자세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공소청은 잘 준비되고 있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10월 2일 개청에 맞추어서 직제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10월 2일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 많으십니다. 잘해 주시고요.

중대범죄수사청도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어제 행안부장관님께서도 밝히셨듯이 10월 2일 개청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검사의 보완수사,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 그럴 때 검사가 보완수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보완수사를 검사가 누구에게 요구하면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요구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보완수사를 요구하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세히 잘 정리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검사가 해야 될 보완수사 내용만큼 잘 정리해서 하고 그리고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도입이 되어서 진술을 청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서영교 피해자에게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사실 확인을 검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

지,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에서도 또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는 증거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경찰과 다시 그것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장님, 저희가 변화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큰 흐름은 가르마가 타졌고요,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시기고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걱정 없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대검의 과학수사부도 다녀왔습니다. 과학수사부에 다녀와서 압수수색한 것은 절대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접근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무부차관께 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찰을 통해서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위원장님, 직접 NDFC에 오셔 가지고 디지털 증거 시스템을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이고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논란되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1차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들이 적정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저희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 것은 남옥에게 아이 사진이, 선별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 주면서 협박성 수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해 봐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9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과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2(11인)	김승원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박지원 이성운	더불어민주당(6)
	◎박형수 김민전 윤상현 주진우	국민의힘(4)
	손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9인)	◎김한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이성운	더불어민주당(5)
	곽규택 김태규 주진우	국민의힘(3)
	손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승원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윤상현 주진우

○청가 위원(2인)

김용민 이성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정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무대행 노용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중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임시회의록